

변호사 시험과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Bar-Exam and a Curriculum of Law School in Korea

권 영 호**
Kwon, Young-Ho

목 차

- I. 서론
- II. 변호사시험의 현황과 과제
- III. 법학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 IV. 외국의 변호사 시험
- V. 결론

국문초록

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랜 논의의 결과물이며 한국 법학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의 법과전문대학원체제는 법과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학부의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미국과 유사한 체제로 보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들은 법과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의 법학교육체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법과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논문접수일 : 2011.06.26

심사완료일 : 2011.07.27

게재확정일 : 2011.07.28

* 이 논문은 한국공법학회 제161회 국제학술대회(2011년 04. 22)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법학박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학도 법학과를 존속시킬 수 있는 일본의 법학교육과정과도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우리나라 변호사 교육,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우선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난이도도 너무 높은 것 같다.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이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은 엄격하게 하되, 시험은 최소한의 법적지식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법시험보다도 어려운 시험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과과정의 전문화 즉 track제와 사례형 시험과 논술형 변호사 시험에서 교재참조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주제어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프랑스 변호사시험, 영국 변호사시험, 미국 변호사시험

I. 서론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법학교육이 시작되고, 사법시험이 실시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법학교육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노무현정부에 들어서서 법학교육과 변호사

양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2월 4일 서울권역에 15개 대학과 지방 4개 권역에 10개 대학 총 25개 대학을 인가대학으로 예비 인가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랜 논의의 결과물이며 한국 법학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의 법과전문대학원체제는 법과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학부의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¹⁾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미국과 유사한 체제로 보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들은 법과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의 법학교육체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법과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 법학과를 존속시킬 수 있는 일본의 법학교육과정과도 다르다.

2009년 이후 25개 법과전문대학원이 2천명의 신입생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체제하에서의 법학교육은 기존 법과대학과 유사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으로 이원화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변화된 이후에도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간의 유기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이나 교육목적의 정립에 대한 정책은 알려진바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변호사 교육,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우선 각 법학전문대학원들마다 특성화분야를 설정하고, 그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전임교원들을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이 시험과목이 아닌 특성화교과목들을 어떻게 소화할지는 매우 의문이 간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난이도도 너무 높은 것 같다. 지난학기까지 두 차례 실시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를 사례로 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의 교육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의 수준의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다면 학부에서 법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학을 전공하지 않은 원생들의 대거 탈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되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제기된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각 분야의 전문변호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길러내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 할 장래의 법조인”은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과거의 제도”로는 길러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이다.²⁾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선발’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험’은 그 ‘교육’을 확인하는 절차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은 엄격하게 하되, 시험은 최소한의 법적지식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법시험보다 많은 과목에 대한 평가와 사법연수원생의 수준에 달하는 난이도의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변호사시험과목에 대한 수업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³⁾

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변호사시험의 현황과 과제

1. 변호사시험의 현황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2012년에 실시할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보다 아래 <표-1>과 같이 시험과목 수도 많고,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와 같이 요구되는 법학지식의 척도도 사법연수원 1년차의 수준으로 사법시험보다 높다. 이러한 경향은 변호사시험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기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현행제도는 '로스쿨'에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담겨 있다. 즉 시험범위가 너무 넓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진 것이다.⁴⁾

현행 변호사시험의 과목은 <표-2>와 같이 선택형시험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고, 논술 형 시험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선택과목 1과목이다. 언뜻 보면 현행 사법시험의 1차(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및 2차(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과목보다 과목수가 줄어든 듯이 보인다. 하지만, 공법은 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사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포함한다. 형사법은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의미한다.(변호사시험법 제9조). 게다가 사법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고 그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실시하는 데 비해,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시험과 논술 형 시험 및 기록 형 시험을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9조). 특히 선택형 시험에서 새로 추가된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하여 법조윤리과목을 합격하여야 하고, 기록형 시

3) 김창록, “한국로스쿨, 제3차 수의 파동”, 『법과 사회』, 법과 사회 이론학회, 2010, 345면.

4) <표-3> 참조.

험까지 포함하여 1주일의 시험기간 내에 치러야 하는 부담은 수험생들에게 과중할 수밖에 없다.

〈표-1〉 변호사시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p>⇒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p>

〈표-2〉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 약관의규제에 관한법 등

〈표-3〉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 비교

구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 과목	1차 선택형 필기 : 5개 과목	선택형 필기 : 7개 과목
	선택형 필수 3과목[헌법, 민법, 형법], 선택 1과목, 공인영어성적	선택형 필수 7과목[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차 논술형 필기 : 7개 과목	사례 형 필기 : 8개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전 과목 +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선택형 필기시험 전 과목 + 전문분야 선택 1과목(사례 형 논술시험과 실무능력평가인 기록형 시험 포함)
시험 기간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1, 2차에 나누어 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는 것으로 함

*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으로 본 시험 전에 실시하여 P/F로 평가함. 합격한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변호사시험법의 과제

1)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은 우선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은 기본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에 대한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만으로 구성하면 충분하다.⁵⁾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

5) 김창록, 전계논문, 345면.

와의 연계 등을 위해 복수의 법률분야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본과목은 "복수의 법률분야를 융합하여 출제가 가능하도록"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사례 형 시험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선택형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언어 이해, 추리논증, 논술과목을 평가하여 전국에서 2,000정도를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택형시험을 치르게 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위와 같은 과목의 법학적성시험과 영어시험을 통해 수학능력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형 시험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 이에 관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해설자료」에서는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넓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그 적극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다형이라는 '초고도의 선택기술'을 요구하는 시험을 통해 과연 그러한 측정이 가능한지는 크게 의문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법학적성시험을 통하여 평가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을 수료한 다음 평가를 하여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과과정의 운영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력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⁶⁾

3) 사례 형 시험의 문제점

현행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3년의 교육기간에 비해 수학하여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변호사 시험의 문제로는 변호사 시험의 시험과목이 많다는 점이 나타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에 비추어 봐도 시험과목이 많다. 또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르면 학

6) 같은 뜻, 김창록, "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 「법과 사회」, 법과 사회 이론학회, 2009, 18면.

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원생들도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던 원생들이 3년간의 교육을 거쳐 전문법조인으로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배울 내용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기에 위하여 기존의 사법시험과 같이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시험형식에 대비하게 해서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배출될 변호사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사례 형 변호사 시험의 방식을 기존의 법전만을 참조하고 치르는 형태에서 법전과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재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교재참조제도(open-book시스템)로 전환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향상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자격은 현실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식의 응용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문제해결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의 시행하는 교재와 법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방식은 실무에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으로서 또한 학식의 응용력을 판단하는 시험으로써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강의경험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을 현행 시험제도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문제를 출제할 경우, 시험문제의 공정성에 있어 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의 문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존의 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변호사 시험의 사례 형 시험의 유형은 사법시험의 필기 형 시험의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 방면의 전문적인 변호사 양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례 형과 기록 형 시험에서의 교재를 참조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제도의 변화는 우리 학계와 법조계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 문제와 더불어 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기존의 시험방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문적인 성향의 편식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모의고사를 살펴볼 때 사례 형 문제는 기존의 판례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례 형 문제들을 법전만 가지고 풀 경우, 수험생들은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 즉 최종심에서의 다수설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학설상 대립되는 논리를 답안지에 적을 여력도 훈련도 되어 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추후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분쟁에서 법리에 관한한 우리 법조계의 편향된 시각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높다.

4) 사례 형 시험에 대한 제언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에서 사례 형 시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된바 없다. 변호사시험법 제8조와 제 14조 및 제 15조에서 시험의 방법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시험법 제15조에서는 제4호에서 변호사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 시험의 과목의 축소나 선택형 시험의 폐지 및 시험일자의 조정은 결정에 있어 시일이 요구되므로 내년에 있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중 사례 형 시험에 있어 open-book 제도의 도입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 법학의 발전과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공정한 시험으로서의 변호사 시험을 위해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 형 시험의 교재참조제도(open-book시스템)를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권하는 바이다.

Ⅲ. 법학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1.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호사 양성제도가 바뀐 뒤 법학과와 법학전

문대학원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학계나 법조계 어디에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동법 제26조 2항에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원생을 2/3이하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 중 다수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르면 법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원생들도 입학이 가능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이 원생들 간의 법학지식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수가 법학의 초보자와 이미 전공한 자를 같은 위치에서 놓고 같은 반에서 교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졸업자와 법학 비전공자들 간의 교육과정은 수학 기간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수학 과정을 4년으로 늘이고, 법학전공자들은 3년으로 졸업요건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조건으로 사법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응시자격의 사례와 같이 법학과목의 이수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사법시험법에서는 35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18학점 내외의 법학과목의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면 비전공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 내의 이수율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과과정의 운영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위와 같이 개정이 되면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유사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 및 교양법학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그 위상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은 전문대학원마다 조금씩은 다르나, 전반적인 틀은 비슷하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례를 들면, 법학전문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래 <표-4>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살펴보면 법조 실무과목과 공법, 형법, 민사법 기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을 이수한 뒤 본인이 선택하는 기본권론, 국가기구론

<표-4>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필수교과목

	1년차		2년차		3년차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2009 입학자 적용	*법정보조사론1 (1/1) *법문서작성론1 (1/1)	*법정보조사론2 (1/1) *법문서작성론2 (1/1)	*법조윤리 (2/2)		*모의재판(2/2) *법률실습(3/3)	
	*헌법일반이론 (3/3) *민법일반이론 (3/3) *형법일반이론 (3/3) *행정법일반이론(3/3)	*계약법 (3/3) *상법일반론 (3/3) *민사소송법 (3/3) *형사소송법 (3/3)				
2010 입학자 적용	*법정보조사론 (1/2)		*법조윤리 (1/2)	*법문서작성론 (1/2)	*모의재판 (1/2) *법률실습 (1/3)	
	*공법1(2/3) *민법1(2/3) *민법2(2/3) *형법1(2/3)	*공법2(2/3) *민법3(2/3) *민법4(2/3) *형법2(2/3) *회사법(2/3)	*민사소송법 (2/3) *형사소송법 (2/3)			
2011 입학자 적용	*법정보조사 론 (1/2)		*법조윤리 (1/2)	*법문서작성 론 (1/2)	*모의재판 (1/2) *법률실습 (1/1)	
	*공법1 (2/3) *민법1 (2/3) *민법2 (2/3) *형법1 (2/3)	*공법2 (2/3) *민법3 (2/3) *민법4 (2/3) *형법2 (2/3) *회사법 (2/3)	*민사소송법 (2/3) *형사소송법 (2/3)			

등 법학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교과과정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예상보다 어렵다 예측되는 현행제도에서 원생들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험 관련과목 만을 수강하는 경향을 각 학교마다 찾아 볼 수 있다. 학교마다 특성화영역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설강하고 있으나 원생들이 얼마나 호응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와 같이 track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마다 규정된 특성화 관련 교육 과정과 더불어 공법, 사법 및 형법과정을 설치하여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변호사 양성과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변호사, 판검사로 대표되는 법조계외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⁷⁾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설강되는 과목과 이수학생들의 인원을 살펴보면 <표-5>와 <표-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심화된 전문 과목의 수강인원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변호사 시험의 형태가 소송 중심의 사례위주로 출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사례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 준비를 할 경우, 기존의 학설과 법리보다는 판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암기력을 요구하고 법학에 관한 변별력과 추리력, 및 창조적인 사고를 측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시험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정원이 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독특한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송중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론중심의 강의에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원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이 수강하는 헌법 및 상법에 관련된 과목들의 수강비율이 과거 법학과 시절과 같은 선택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한 학부생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 방면에 필요한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7) 독일의 경우 대학에서 강의와 사례연습 및 세미나 과목들을 주로 강의하고, 주에 따라 세미나 주제를 레포트로 작성하여 선택과목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독일의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는 과목들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생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태영,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 양성", 『동아법학』 제39집,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66면 이하 참조.

많다. 그리고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의 직역확대가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 소송전문변호사를 양성하는 교과목의 편중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표-5〉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수강현황(2009~2011학년도 개설교과목 수강인원)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교과목명	수강현황 (입학정원:40)						
	2009	2010	2011				
국제거래법		10	7	국제거래법개론			국제거래와법
회사법 (회사법연구)	10	34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I, II	
노동법 (노동법1)			5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근로기준법	근로계약법
사회보장법				개별적노사관계법	개별적노사관계법	노동단체법	노동단체법
통치구조론 (통치구조연구)		6	7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과 인권
기본권론 (기본권연구)		16	29	공법1 (헌법과정치제도)	헌법소송법	헌법 I, II	기본권론
행정법일반이론	38			공법2(기본권론)	인권정책과법		
				공법3 (행정법총론)	행정법 I, II	행정법	행정법기본이론

〈표-6〉 법학부 교과목 수강현황(2007~2008학년도 개설교과목 수강인원)
- 2007학년도 입학정원 : 82명, - 2008학년도 입학정원 : 82명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교과목명	수강인원					
		2007	2008			
국제거래법 I (3학년)	60	44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1.2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II (3학년)	12	23				
회사법(3학년)	56	67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노동법 I(3학년)	44	43	노동법 I, II	노동법	노동법1.2	노동단체법
노동법 II(3학년)	13	25				근로계약법
사회보장법(3학년)	28	41	사회보장법	사회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통치기구론(2학년)	81	65	헌법 I, II	헌법 I, II	헌법1.2	통치조직법
기본권론(1학년)	93	116				기본권론
행정법총론(2학년)	113	111	행정법 I, II	행정법총론	행정법1.2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2학년)	73	60		행정법각론		행정법각론

3. 선택과목의 확대 및 시험방법의 개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택교과목의 편중 현상은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법조인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과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변호사, 판사, 검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기관, 국회 및 공공기관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5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과목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변호사 시험법과 교과과정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은 것 같다.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은 소송변호사로서의 자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송대리인으로서 능력보다는 입법정책학적인 지식과 법정책학적인 지식이 더욱 요구되는 직역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법학에 관한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능력 배양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 진 것 같다. 물론 법조인으로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중요하기는 하나 다른 분야에서의 활약을 감안할 때 법정책학적인 수련과 학문적인 수련 역시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는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 영역으로 부터의 요구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교과과정에서 track제 운영과 더불어 시험방법의 open-book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험과목에서 법학과목의 인접사회과학과목들의 즉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선택과목화와 국사와 법제사 등 기초과목의 선택과목으로서의 채택도 고려할 만하다. 아래 <표-7, 8>에서 보여 주듯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과목의 인접 사회과학 과목이나 관련단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의 설강은 매우 요원하다.

〈표-7〉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련 교과목 외 개설현황
(2011학년도 입학자 적용기준)

- 제주대학교 특성화 분야 : 국제법무
- 서울대학교 특성화 분야 :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 연세대학교 특성화 분야 :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 경북대학교 특성화 분야 : IT법
- 전남대학교 특성화 분야 : 공익인권

학교명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교과목 현황	없음	국제비즈니스협상	없음	M&A와 기업금융실무	기업유형론
		협상과거래의디자인			
		법경제학			
		법경제학특강			
		법의학		법의학	법의학
		정당과민주헌정			
		비즈니스딜			
		세무회계			

〈표-8〉 학부(2008학년도 입학자 적용기준) 법학과목의 교과목 설강 현황

학교명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교과목 현황	없음	행정학	없음	없음	회계원리
		회계학			정책학개론
		정책학			미시경제이론
		도시 및 지방행정			거시경제이론
					리더십론

4. 법학과과 교양법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학지식의 고양을 위하여 법학과가 맡아야 하는 학부에서의 교양 법학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학과에서 학부의 복수 전공제도를 통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교육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을 다시 제고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국가기능면으로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계도 중요하나 법률 제정에 직접 참여하고 입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종사하는 입법부, 행정부 관련 공무원과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일차적으로 해석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도 우리 법 제도의 한축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이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교양법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법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도 최소한 공법, 형사법, 민사법 등 기초분야에서 2과목 씩 18학점 정도의 교양법학 학점을 취득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아래 <표-9>에서 보여주듯이 교양법학과목의 수와 분야가 매우 부족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교양법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겠다.

<표-9> 법학관련 학부 교양교과목 개설현황(2011학년도 입학자 적용기준)

- 제주대학교 : 균형교양분야에서 개설
- 서울대학교 : 핵심교양과 일반교양분야에서 개설
- 연세대학교 : 선택교양분야에서 개설
- 경북대학교 : 일반교양분야에서 개설
- 전남대학교 : 일반교양분야에서 개설

학교명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교과목 현황	법학입문 (2학점)	법과문학	법과의사소통	현대사회와법	법학개론
		법사상고전강독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법학개론	법과윤리		
		법과윤리			
	생활법률 (2학점)	현대사회와법	법과민주주의	한국법입문	생활법률
		여성과법			
		시장경제와법	법과사회질서		
		민주시민과헌법			법률문장론

IV. 외국의 변호사 시험

1. 미국의 변호사시험

미국의 변호사제도는 주마다 그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전원에게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

정한 검증을 거쳐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인증되어야 그 자격을 부여한다.⁸⁾ 이러한 검증과정이 변호사시험이며, 변호사시험은 각 주의 주관하여 행해진다.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은 각 주에서 관장하며, 구체적인 시험제도나 시험과목 등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일부 주에서는 위의 자격 외에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실무연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판사나 변호사의 지도 아래 4년간 실무연수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식의 법학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시험과목과 방법이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 연방법과 각 주에 공통되는 보통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객관식시험, (2) 각 주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논술식시험, (3) 법조윤리시험은 3가지 시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며, (4) 최근 미국에서는 주어진 사례에 대하여 변론서를 작성하는 실무능력시험(Performance Test)을 추가로 요구하는 주가 늘고 있다.⁹⁾

객관식시험은 루이지아나, 워싱턴 주와 프예르토리코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Multistate Bar Exam(MBE)이라는 공동시험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년 2월과 7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며, 계약법·불법행위법·헌법·재산법·증거법·형사법 등 6과목에서 총 200문제가 출제된다. 논술식시험은 각 주별로 State Essay Exam의 형태로 실시되며, 각 주마다 시험 과목과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에서 MBE시험 전날이나 다음날 논술식시험을 실시하여 수험생들이 두 시험을 동시에 치르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부 주들은

8) 위스콘신 주와 뉴햄프셔 주 같은 경우 자기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변호사 시험없이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David Lee Mundy,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국제심포지움, 건국대 법학연구소, 법과 사회이론 학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8. 11. 17. 93면.

9) 김재원, "미국의 법률가 양성제도와 법학교육",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I」, 사법제도 비교연구회, 2004. 279면.

논술문제도 공동으로 출제하여 각자 채점하는 Multistate Essay Exam(MEE)을 채택하고 있다. 논술 시험은 한 과목당 30분씩 총 3시간에 걸쳐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대리와 조합·섭의사법·회사법·유산의 처리·가족법·연방민사소송법·상사거래법·담보거래법·신탁법 등이다.

법조윤리시험은 Maryland·Washington·Wisconsin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MPRE)이라는 공동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 객관식시험이나 논술식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3월, 8월, 11월에 실시되고, 객관식문제 50문항이 출제되며, 일부 주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BE와 MPRE 및 MPT는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NCBE)가 관장하고, 각 주의 논술시험은 대체로 각 주 대법원 또는 변호사협회 산하의 Board of Bar (Law)Examiners 또는 Committee on Bar Admissions가 관장한다.

변호사시험은 정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충실히 교육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그 수에 제한 없이 모두 합격 처리하므로, 이 시험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2005년의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미국 전체에서 80,557명이었고 그중 51,958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약 64%에 이르렀다. 변호사시험은 이처럼 비교적 어렵지는 아니하나, 명문법학전문대학원 의 경우 교과과정이 연방법 위주로 되어 있고 강의 내용이나 시험방법 등이 변호사시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해지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사설 학원에서 별도의 강의를 듣는다. 이러한 사설 학원의 강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변호사시험을 보기 전까지 약 1개월 20일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사설학원에서는 각 주별 시험용 교재에 의한 강의 외에 시험기술 습득을 위한 모의고사도 실시한다.

2. 영국의 변호사제도 및 법조인 양성과정

영국의 변호사는 Barrister(법정변호사)와 solicitor(사무변호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고, 사무변호사는 일

반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한다.¹⁰⁾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정변호사와 실무 변호사가 이전과 같이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사무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변호사도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자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사무변호사(solicitor)

영국에서 사무변호사는 Law Society(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Law Society는 Training Regulations 1990에서 사무변호사 자격요건 및 선발과정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변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사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기도 한다.¹¹⁾ 영국에서도 늘어나는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무변호사 선발을 증가시켜 온 결과 1967년에 22000명 정도였던 사무변호사의 숫자가 2002년에는 100,000명을 넘어섰다.

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정(academic training)과 실무교육과정(vocational training)과정을 마쳐야 한다. 법학교육과정은 법학학사학위 소지 여부에 따라 법학학사학위 소지과정(Law graduate route),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 소지과정(non-law graduate route), 학사학위 미소지자과정(non-graduate)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무교육과정은 Legal Practice Course, Training contract, Professional Skills Course의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사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우선 Law Society에 사무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여 사무변호사 명단인 Roll of Solicitors에 등재되어야 하고 또한 Law Society에서 발급하는 Practising Certificate(실무경력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Law Society에는 전체 사무변호사의 명단인 Roll of Solicitors와 Practising Certificate를 지니고 있는 사무변호사의 명단을 모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열람을 제공하고 있다.

10)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소위원회 참고자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53면 이하 참조.

11) 법원행정처,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각국의 비교」, 법원행정처, 1995. 03. 128면.

2) 법학교육과정

(1) 법학학사학위 소지자과정

법학학사학위 소지자과정을 통하여 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Law Society가 인정하는 법과대학에서 ① 계약법(contract Law), ② 불법행위론 (restitution and tort Law), ③ 공법(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human rights Law) ④ 형법(criminal Law), ⑤ 재산법(property Law) ⑥ 형평법 (foundations of equity and the Law of trusts), ⑦ 유럽법(Law of the European Union) 등 7가지의 기본법학과목을 3년 동안 이수한 후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Law Society로부터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 소지자과정

영국에서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또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으로서 Law Society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학생은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CPE)/ Graduate Diploma in Law(GDL) 과정을 거치거나 senior-status Law degree 과정을 거침으로써 법학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다.

(3) 학사학위 미소지자과정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Institute of Legal Executives route(ILEX) 과정을 거치거나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CPE)/Graduate Diploma in Law(GDL) 과정을 거침으로써 법학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다.

ILEX과정은 법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ILEX Professional Diploma in Law Level 3 시험에 합격하여 최소 5년 동안 ILEX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다시 ILEX Higher Professional Diploma in Law Level 4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법학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다. 한편 학사학위 미소지자라도 학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거치는 CPE/GDL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 ILEX 과정이나 CPE/GDL 과정을 마친 사람은 Law Society로부터 student membership

of the Law Society와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the academic stage of training을 받은 후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¹²⁾

3) 실무교육과정

법학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우선 Law Society에서 인정하는 법과대학에서 full-time으로는 1년, part-time으로는 2년 동안 Legal Practice Course(LPC)를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주로 법학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지에 관하여 배우게 된다.

LPC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Law Society로부터 사무변호사 수습기관으로 인정된 법률회사(Law firm), 일반회사의 사내법무팀(in-house legal department), 중앙 및 지방정부,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재판법원 사무국(Magistrates' Court Service) 등에서 full-time으로는 2년, part-time으로는 4년 동안 수습변호사(trainee solicitor)로서 실무경험을 익히고 보수도 지급받는 training contract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학사학위 미소지자로서 ILEX과정으로 법학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training contract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학사학위 미소지자로서 ILEX으로 법학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training contract 과정이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Professional Skill Course(PSC)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LPC 과정과 training contract 과정을 통하여 익힌 실무교육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training contract 과정 중에 12일간 이루어진다.

4) 법정변호사(barrister)

법정변호사는 Bar Council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변호사로 되기 위한 과정에서 거친 Inns of court에도 소속되어 있다. 현재 Inn of Court는 Lincoln's Inn, Midle Temple, Inner Temple, Gray's Inn 등 4곳이 있는데, 법정변호사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영국 법관들은 법정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관으로 임명되며

12)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0, 110면.

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계속 자신이 속한 Inns of Court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2004년 12월 현재 법정변호사의 총 인원은 18,930명이며 이중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법정변호사의 수는 14,364명이다.

법정변호사로서 법정 변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정과 실무교육과정 및 pupillage 과정을 이수한 후 practising certificate를 획득하여야 한다. 법정변호사는 사무변호사와 달리 동업이나 법률회사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각각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협회(chamber)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정변호사로서의 경력 동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법정변호사는 Queen's counsel의 구성원으로 발탁되는데 이들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의 법정 변호업무를 수행하며 법원 고위직 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5) 법정변호사의 법학교육과정

법학교육과정은 사무변호사에 대한 법학교육과정 중 학사학위 미소지자를 위한 ILEX 과정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무변호사의 법학교육과정과 동일하다.¹³⁾

3. 프랑스의 변호사제도

1) 변호사의 선발과 양성¹⁴⁾

변호사를 선발하는 방법은 정규선발과 비정규선발로 구분할 수 있다. 정규선발이란 법학석사 1년차 수료 또는 동등 학위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방법이고, 비정규선발이란 일정한 전문직에 종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13) 이 부분은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0, 110면에서 많은 부분 인용하였음.

14) 남효순, “프랑스의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법학」, 45권 4호(133호), 서울대학교, 2004.
12 : http://archives.cnb.avocat.fr/VieProfessionAvocat/VPA_deveniravocat.php

선발방법이다.

2) 정규선발

변호사 양성은 고등법원 단위의 변호사회(barreau)에서 담당하는데,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고등법원 관할구역마다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 변호사연수원(Centre Régional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d'Avocats, CRFPA)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약1년 6개월간 연수원 교육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CAPA) 취득시험을 볼 수 있고, 이를 취득한 후 각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명부(le tableau de l'ordre)에 등록하여야 한다. 프랑스 국적은 변호사 자격 취득의 요건이 되지 않으며, 고등교육과정 중 석사(Master) 1년차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필요하다.¹⁵⁾

변호사연수원에서의 연수과정은 6개월 동안의 기본이론강의(Acquisition des Fondamentaux), 6~8개월 동안의 개인적인 외부전문기관 실습(Projet pédagogique individuel), 6개월 동안의 변호사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 비정규선발

비정규선발이란 일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선발자도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해당 지방변호사회 이사회의 등록허가를 받아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에는 다시 제1군 및 제2군의 2종류가 있는데, 일반 사법법원 및 행정법원의 전·현직 사법관, 법학교수 등이 포함되는 제1군 전문가는 학위요건, 변호사연수원의 입학시험, 연수 및 연수 수료시의 변호사자격시험 모두를 면제

15) 프랑스는 원래 3주기제의 고등교육제도-1주기(2년)는 DEUG(Diplôme d'Etudes Approfondies) 과정 또는 DESS(Diplôme d'E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 과정과 최소 2년의 박사논문 준비 과정으로 구성-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4-2005학년도부터 이를 개편하여 유럽연합회원국의 표준화된 고등교육제도인 소위 LMD(Licence-Master-Doctorat)제도-3년의 Licence 과정, 2년의 Master 과정, 3년의 Doctorat 과정-를 도입하였다.

받으며, 공증인, 집행관, 특정 직종의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행정·공기업·국제기구에서 8년 이상 법률업무에 종사한 자, 기업에서 법률전문가로서 8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기업법률가(le juriste d'entreprise) 등이 포함되는 제2군 전문가는 학위요건은 면제되지 않고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연수 및 변호사자격 시험만이 면제된다.¹⁶⁾

V. 결론

현행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 변호사 시험의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형 시험은 미국제도와 유사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독일의 국가고시 1, 2차 시험과 유사하다. 다만 독일, 프랑스 시험과 다른 점은 공정성 논란에 따른 구술시험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 시험이라는 명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 시험의 성격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변호사 시험형태와 교과과정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현행 변호사 시험을 살펴보면 시일을 필요로 하는 개선방안과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변호사 시험 중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서 교재를 참조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채택이다. 또 다른 개선 방안으로 비록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선택형 시험의 방식이다. 선택형 시험을 변호사 시험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부작용을 이유로 사장시키기 힘들다면 선택형 시험을 사례형과 기록형 등 논술형 시험과 분리하여 2학년 말에 시행하거나 법학적성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수업평가방식의 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어 교과과정의 엄정성 확보와 원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16)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198면 인용.

또한 교과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공제 또는 track제를 도입하여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역사와 경제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과목의 필수화와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으로의 채택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에 적합한 법조인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 속의 법교육 강화」, 법무부, 2006.
- 법원행정처,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각국의 비교」, 법원행정처, 1995.
-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0.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 곽한영,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 법교육학회, 2009.
- 남효순, “프랑스의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법학」 45권 4호(133호), 서울대학교, 2004.
- 김선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 교육”, 「영산법률논총」 제2권 제1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5.
- 김재원, “미국의 법률가 양성제도와 법학교육”,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 사법제도비교연구회, 2004.
- 김창록, “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 「법과 사회」 제36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9.
- 김창록, “한국로스쿨, 제 3차 수의 파동, 법과 사회”, 「법과 사회」 제39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 김현철,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09.

- 윤일증,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08.
-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 제2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 이재승,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민주법학』 제4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
- 하태영,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 양성, 『동아법학』 제39집,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소위원회 참고자료, 2009.
- 성낙인 외, 법교육지원법 입법을 위한 연구보고서, 한국법교육학회, 2007.

[외국문헌]

- Caliber Associates, “The Promise of Law-Related Education As Delinquency Prevention”, Technical Assistance Bulletin No 19, ABA, 2002.
- David Lee Mundy,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국제심포지움, 건국대 법학연구소, 법과 사회이론 학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8. 11. 17.
- Löwenstein, Karl, 김효전 옮김, 비교헌법론, 교육과학사, 1991.
- Miller, Alice, 신흥민 옮김,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양철북, 2009.
- Norman Gross, “Contributors to Memorandum on Law-Related Education : A Crucial Component of American Education”(ABA : 03/24/1978), 『Final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Law-Related Educ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978.
- Neumann, Franz, The Democratic and the Authoritarian State, Free Press, 1957.
- UNESCO, Human Rights Teaching 제5권, UNESCO,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Bar-Exam and a Curriculum of Law School in Korea

Kwon, Young-Ho

Prof.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at Korea adopted a graduate law school system similar to the American model does not mean Korea should import wholesale the current incarnation of the United States bar exam or licensure system.

Korea is heading toward a worst case scenario where there is a choke point not just 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can enter the new law schools, a quota with no international precedent, but also a choke point on entry into the profession. Instead it is suggested that three years of study at the new graduate law schools will more than adequately address concerns regarding the core competence expected of new practitioners and that granting "Graduation Licensure" will have the greatest immediate impact in improv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legal practitioners. Regardless, either the incoming quota on law students or the bar examination has got to give.

And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on what kind of difference school of law has concerning legal education comparing with that of undergraduate study of law, which leads to the question of the teaching method at law school.

This article is a trial of analyzing the model bar exam questions and mentioning the emphasis on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in law school. Even though there may be different view points on the model bar exam questions, bar exam's main trend of dealing with important theme in the legal practices and real disputes is not to be changed easily for the present.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converged case method as one of the teaching methods at law school which combines a substantial law with a procedure law as well as each different law subject and also shows an example of model converged lecture.

However new Korean Bar Exam is more difficult than other countries and the old one, because of many subject in exam. Especially this paper suggest the Korean Bar Exam use the test-system with textbook as German Bar Exam.

Key Words : Bar-Exam, Law School, a Curriculum of Law School, French Bar Exam, British Bar Exam, American Bar exam

